

대구지역 제조-S/W 융합형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 육성 사업』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대구지역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 역량 강화에 기반한 융합형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위한 『차세대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 육성 사업』의 2015년도 기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7월

(재)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장

I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지역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 역량 강화에 기반한 융합형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위하여 ICT DEVICE 역량 강화를 통한 차세대 디바이스 발굴 및 지역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 육성을 통하여 제조-SW 융합형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하고자 함.

2.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5. 11월(총 3개월)¹⁾
- 지원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대구지역내에 본사/공장/연구소가 있는 벤처· 중소기업²⁾
- 지원분야 :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아래의 융합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함.

① 기계 금속 분야 ② 자동차 부품 분야 ③ 전자정보기기 분야

- 지원내용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건수	지원금액
1	중소기업 특화 임베디드 제품화 지원	• PCB 설계 및 제작, 엔지니어링 샘플(목업) 제작, 금형 설계 및 제작 등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2건 내외	32,000천원 이내/건당
2	임베디드 시스템 신뢰성 및 시험인증 지원	• 임베디드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시험, 성능 및 표준화 인증, 전파 인증 등 시험인증 비용 지원	4건 내외	10,000천원 이내/건당
3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ITCE)	3건 내외	-
		• 2015 두바이 정보통신 박람회(GITEX)	1건 내외	

※ 국내전시회인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ITCE)”의 경우, 지역 전시회 활성화 및 지역기업의 성과확산을 위하여 지원건수를 확대하여 추진함.(지원건수 3건 내외 -> 지원건수 6건 내외)

- 1) 기간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II 세부 지원 분야

1. 세부1) 중소기업 특화 임베디드 제품화 지원 사업

-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고도의 성장성 높은 융합기술 발굴 및 제품화 지원 추진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건수	지원금액	기업부담금
중소기업 특화 임베디드 제품화 지원	PCB 설계 및 제작, 엔지니어링 샘플(목업) 제작, 금형 설계 및 제작 등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2건 내외	32,000천원 이내/건당	총 과제비의 30% 이상

- 지원기업 : 대구지역내에 본사/공장/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³⁾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35백만원⁴⁾ 이내(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1기업당 1과제 지원, 총 과제비 중 30% 이상 기업부담금 투입(현금 10% 이상)

2. 세부3) 임베디드 시스템 신뢰성 및 시험인증 지원 사업

-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유망상품의 신뢰성 향상, 안전성 확보 및 성능인증, 표준화 등 제품경쟁력 확보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대외 신뢰도 증진으로 기업의 핵심 경쟁자산 확보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건수	지원금액	기업부담금
임베디드 시스템 신뢰성 및 시험인증 지원	임베디드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시험, 성능 및 표준화 인증, 전파 인증 등 시험 인증 비용 지원	4건 내외	10,000천원 이내/건당	지원금의 10%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⁵⁾ 이내(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기업 : 대구지역내에 본사/공장/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⁶⁾
- 지원조건 : 1기업당 1과제 지원, 지원금액의 10%(부가가치세) 기업 부담

3. 세부4)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신시장 개척과 사업화 성과 확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각 분야의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완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5) 각 분야의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완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지원항목	개최기간	지원건수	기업부담금	지원내용
• 2015 대한민국 IT융합엑스포(ITCE)	‘15.8.19~21 (3일간)	3건 내외	-	• 모바일융합센터 공동관 구축 - 전시부스 임차비용(1개부스/1개사) - 전시부스 시설장치 및 비품임차 - 브로슈어 제작 및 홍보지원 - 제품시연 및 상담지원
• 2015 두바이 정보통신 박람회(GITEX)	‘15.10.18~22 (5일간)	1건 내외	-	• 모바일융합센터 공동관 참가 - 전시부스 임차비용(1개부스/1개사) - 전시부스 시설장치 및 비품임차 - 브로슈어 제작 및 홍보지원 - 바이어 상담통역(1인/1개사) - 전시물품 운송지원(편도/1CNM) - 현지간담회 및 기타 현장지원 등

※ 전시회 참가 지원의 경우, 항공료 및 체재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동일 전시회로 타 기관(KOTRA, 전시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업 : 대구지역내에 본사/공장/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지원횟수 제한없으며, 기업부담금 없음

III 신청, 접수 및 유의사항

1.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15. 7. 31(금) ~ 8월 7일(금)
- 신청서 교부: 대구테크노파크 및 아래의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구테크노파크(www.ttp.org), 대구경제플러스(www.dgeplus.or.kr), 대구하나로지원센터(<http://www.hittp.org>), 중소기업청 운영 사이트(www.bizinfo.go.kr) 등
- 신청서 접수기간: ‘15. 8. 7(금) 17:00까지
- 접수 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반드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접수처: (우.704-8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891-5번지 3층 모바일융합센터 모바일융합사업팀 “차세대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 육성 사업 사업계획서 재중” (Tel: 053-602-1849)

2. 제출서류

- 아래 제출 서류 1~5번을 각 1부씩 순서대로 묶어 총 8세트로 제출해야 함.
- 제본/링 처리하지 않고 집게로 묶어 제출해야 함.

번호	제출양식	서식	수량	비고
1	사업 신청서	서식1	원본 1부, 사본 7부	
2	사업 계획서	서식2	원본 1부, 사본 7부	
3	2013년, 2014년 결산재무제표		원본 1부, 사본 7부	국세청 발행본 혹은 세무사(회계사) 확인본 결산재무제표를 대신할수 있는 손익계산서, 신용평가서,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원, 출자증명 서 등
4	서약서	서식3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만 해당
5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서식4	원본 1부	유사과제 검색결과 별첨
6	사업자등록증		사본 8부	
7	기업 및 제품 카탈로그(국영문)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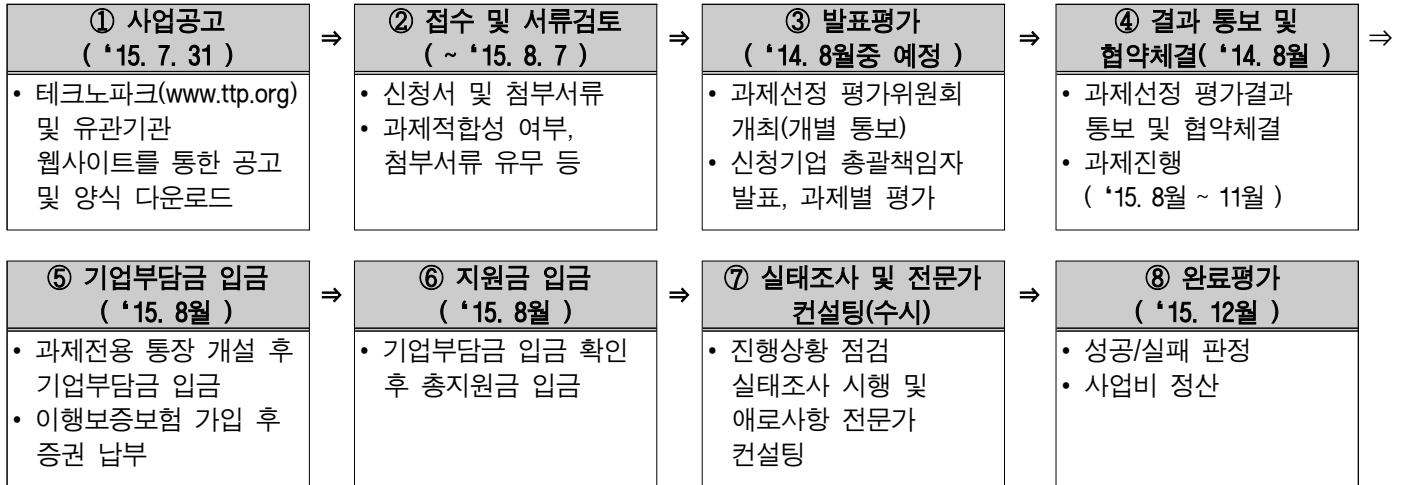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시 첫 장 원본대조필을 찍고 직인 날인해야 함.

3. 접수 시 유의 사항

- 세부3 사업은 세부1 또는 세부2 사업과 중복 지원가능(세부 1, 2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
- 평가에 의하여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치 않을 수 있음.
- 시제품 제작 시 직접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가능, 인건비, 여비, 간접비 등 지원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신청 기업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최근 3년간에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주제로 정부지원을 받은 신청기업
- 선정 이후 과제진행 중 지원 제외 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제재조치 등을 취함.

IV 과제 진행 사항 안내

1. 지원 절차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세부 1~4	경영상태 및 수행역량	- 기업 경영상태(업력, 인력, 매출 등) - 사업 수행역량 및 준비도(수출, 시장조사 등)
	기술성 및 제품경쟁력	- 제품 기술력(국내외 인증, 특허 보유 여부) - 제품 완성도(자체개발력 보유 여부) - 경쟁제품 대비 가격, 디자인 등 우월성
	시장성 및 사업성	- 제품의 시장성(유망성, 성장성 등) 및 사업성(부가가치창출, 지속성 등)
	지원사업 타당성	- 추진목적 및 필요성 등 지원사업의 타당성 - 지원으로 인한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
	기대효과	- 지원 결과 활용방안 - 지원으로 인한 예상실적 및 기대효과 (매출, 수출, 생산성 증대, 기술적 성과 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2. 과제 수행 시 유의 사항

○ 과제비의 관리 및 사용

- 과제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되도록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통합 관리 하여야 함.
- 과제비 집행증빙은 지출일자 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진행상황 점검이나 담당자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과제비 집행증빙은 과제 기간 내(협약일 ~ '15. 11월 이내) 지출완료 사항만 인정함.
- 진행상황 수시 점검: 점검결과에 따라 수행기업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비 사용 실적 보고 및 정산
 - 과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통장사본, 과제비 집행증빙은 사업비 사용현황 보고 시 함께 제출.
 - 정산: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비 사용결과에 대하여 전문회계법인 위탁정산을 실시하며 정산결과에 따라 잔액 및 환수금 반납.

3. 문의처: 053-602-1849(E-mail: everlaw@ttp.org , FAX: 053-592-9102)